

교육전문대학원 공동(복수)학위과정 운영 규정

제 개 개 개	정 정 정 정	2013.8.27. 2015.2.27. 2018.7.16. 2022.11.3.	규정 규정 규정 규정	제453호 제516호 제647호 제790호
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	--	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교육전문대학원 학칙 제28조에 의하여 경인교육 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과 외국대학 대학원 간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및 학생교류를 통한 공동학위 또는 복수학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(이하 “본 대학원”이라 한다)과 외국대학 대학원(이하 “교류대학원”이라 한다)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및 학생교류를 통하여 공동학위 또는 복수학위과정을 수학하는 학생에게 적용한다.

제3조(용어의 정의) ① “교육과정 공동운영”이라 함은 본 대학원과 교류대학원의 약정에 의하여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.

② 공동학위제도라 함은 본 대학원과 교류대학원에서 학위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양 대학교가 하나의 학위증서를

공동으로 수여하는 학위를 말한다.

③ 복수학위제도라 함은 본 대학원과 교류대학원에서 학위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양 대학교가 각각의 명의로 수여하는 학위를 말한다.

제2장 지원자격, 교류시기 및 학사관리 등

제4조(지원자격 및 선발) 공동학위 및 복수학위에 지원하는 학생의 자격과 선발 절차는 상호 대학 간 기준에 따른다.

제5조(교류시기) 교류 시기는 매학기 초로 한다. 단, 교류협정에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

제6조(학사관리 및 지도) ① 공동학위 또는 복수학위 과정의 학사관리는 해당 전공과 본 대학원 간의 협조에 의해 공동으로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교류대학 간 학사관리에 관한 사항은 양 대학의 학칙과 규정에 따른다.

② 공동학위 또는 복수학위 학생의 학사관리, 대학생활 지도 등을 위하여 본교 및 교류대학에 주임교수 또는 책임교수(Coordinator)를 둘 수 있다.

제3장 본 대학원 학생의 수학기간 및 신분 등

제7조(수학기간 및 신분) ① 공동학위 또는 복수학위 석사학위 취득을 위하여 수학하고 있는 학생은 본 대학원에서 최소 1년(2학기) 이상 이수 후, 교류대학원에서 1년 이상 수학하여야 한다.

② 공동학위 또는 복수학위 박사학위 취득을 위하여 수학하고 있는 학생은 본 대학원에서 최소 1년 6개월(3학기) 이상 수학하여야 한다.

③ 전항에도 불구하고 교류협력 대학 간 협정으로 수학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

④ 공동학위 또는 복수학위 학생은 전체 수학기간 동안 본 대학원 소속 재학생으로서의 학적을 보유하여야 한다.

제8조(등록 및 등록금) ① 공동학위 또는 복수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은 본 대학원의 등록 절차에 따라 매학기 소정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.

② 학생의 교류대학원 수학기간 동안은 본 대학원 등록금을 감면 또는 면제 받을 수 있으며, 교류대학원에 별도의 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다.

③ 전항에도 불구하고 등록절차 및 등록금을 달리 정한 경우 상호 협정서의 규정에 따른다.

제9조(휴학) ① 공동학위 및 복수학위 학생의 휴학은 교육전문대학원 학칙 [제20조](#)의 기준과는 별도로 운영한다.

② 학생의 국내 수학기간 이후 교류대학원 진학 불가 시 휴학기간은 교육전문대학원 학칙 [제20조](#)의 기준과는 별도로 석사과정 10학기, 박사과정은 14학기까지 허용할 수 있다. 다만, 휴학기간이 해당 기한을 초과할 경우 제적 처리한다.

③ 신입생은 입학 후 최초 1학기는 휴학할 수 없다. 다만, 질병 또는 병역의무, 임신·출산·육아,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경

우는 예외로 한다.

- 제10조(전과 및 수업연한)** ① 공동학위 및 복수학위 학생이 불가피하게 교류대학원 진학 불가 시에는 본 대학원의 타전공으로 전과할 수 있다. 다만, 교육전문대학원 학칙 제8조(지원자격)의 기준을 고려하여 일부 전공은 제한할 수 있다.<개정 2018.7.16.>
- ② 공동학위 및 복수학위 학생이 전과 시 신규 전공의 수업연한은 석사과정은 4학기, 박사과정은 5학기로 하며, 기존 전공의 이수학점은 6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.<개정 2018.7.16.>
- ③ 삭제<2018.7.16.>

제4장 교류대학원 학생의 수학기간 및 신분 등

- 제11조(수학기간 및 신분)** ① 공동학위 또는 복수학위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취득을 위하여 수학하고 있는 교류 학생은 본 대학원에서 최소 1년(2학기) 이상 수학하여야 한다.
-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교류협력 대학 간 협정으로 수학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
- ③ 교류 학생은 본 대학원 수학기간 동안 본 대학원 소속 재학생으로서의 학적을 보유하여야 한다.

- 제12조(등록 및 등록금)** ① 교류 학생은 본 대학원 수학기간 동안 본 대학원 등록 절차에 따라 매학기 소정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.
- ② 교류 학생은 본 대학원 수학기간 동안 본 대학원에 등록금을 납부

하여야 하며,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.

- ③ 교류 학생이 상호 협정에 따라 등록금을 면제받는 경우,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더라도 본 대학원에 소정의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.
- ④ 전항에도 불구하고 등록절차 및 등록금을 달리 정한 경우 상호 협정서의 규정에 따른다.

제13조(휴학) ① 교류 학생의 본 대학원 휴학기간은 석사과정은 3학기, 박사과정은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.

- ② 교류 학생의 본 대학원 진학 후 최초 1학기는 휴학할 수 없다. 다만, 질병 또는 병역의무, 임신·출산·육아,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.

제5장 과정이수, 성적처리 및 학위수여 등

제14조(과정이수 및 학기당 이수학점) ① 공동학위 또는 복수학위 학생이 공동학위 또는 복수학위를 취득하려면, 양 대학의 학위취득에 필요 한 학점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.

- ② 공동학위 또는 복수학위 학생은 본 대학원 수학기간 동안 학기당 12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.

제15조(성적처리 및 학점인정) ① 양 대학원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 평가는 각 대학원의 규정에 따른다.

- ② 본 대학원 학생이 교류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석사과정 총 15학점, 박사과정 총 21학점까지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본 대학원 취득

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.

③ 공동학위 또는 복수학위 학생이 교류대학원의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교류대학의 수학기간 종료 후, 본 대학원에 교류대학원 성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교류대학원에서의 학점 인정 교과목은 전공 관련 교과목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지도교수의 추천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전공 이외의 교과목도 인정할 수 있다.

⑤ 다만, 상호 대학 간 체결한 협정서에 성적처리 및 학점 인정의 범위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

제16조(학위자격시험 면제) 공동학위 또는 복수학위 학생의 학위자격 시험은 대학 간 협정 등에 따라 면제할 수 있다.

제17조(학위수여) ① 공동학위 또는 복수학위 학생이 양 대학원의 학칙과 규정에 따라 졸업 자격을 갖추었을 경우 양 대학의 학위를 수여한다.

② 공동학위 취득을 위한 학위논문의 심사위원은 본 대학원과 교류대학원의 교수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③ 공동학위 또는 복수학위 취득을 위한 학위논문(논문대체과정 포함)은 본 대학원과 교류대학원에 별도 심사절차를 거쳐서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협정에 따라 상대 대학에서 학위논문 심사에 합격한 경우 본 대학원 학위논문 심사절차를 거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.

제18조(준수사항) ① 공동학위 또는 복수학위 학생은 양 대학의 학칙

및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
② 공동학위 또는 복수학위 학생은 우리나라와 교류국가의 출입국관

리법 및 제반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.

③ 공동학위 또는 복수학위 학생은 교류대학 수학기간 동안 질병, 사고 등 부득이하게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학을 할 수 없다.

④ 공동학위 또는 복수학위 학생이 본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대학원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규정에 의한 학위를 수여하지 않을 수 있다.

제19조(준용) 본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은 본교와 상대교의 학칙 및 제 규정에 따른다.

제20조(기타) ① 본 대학원이 외국의 대학원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②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결정하며, 필요한 경우 외국대학원과 협의할 수 있다.

부 칙

① 이 규정은 2013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② 2012년 2학기에 입학한 해외대학과의 복수학위 학생도 본 규정을 적용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제790호, 2022.11.3.>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